



기술표준원 공고 제2006-0182호

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을 제·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06. 08. 03.  
기술표준원장

## 전기용품안전기준제정(안) 및 운용요령개정(안) 입안예고

### 1. 제정취지

신수요 전기용품의 개발로 인해 전기용품안전인증기준(국제기준)이 없는 반신욕조 등 4개품목의 전기용품안전기준을 제정하고 그에 따라 운용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함

### 2. 주요내용

- 반신욕조(K 10002)
  - 기기에 전열소자가 내장되어 있고, 그 전열소자에 의하여 따뜻해진 물에 몸을 담을 수 있는 기기로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물의 온도는 45℃ 이하
  
- 발욕조(K 10003)
  - 기기에 전열소자가 내장되어 있고, 그 전열소자에 의하여 따뜻해진 물에 발을 담을 수 있



는 기기로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물의 온도는 45℃ 이하이며, 오존의 농도는 0.05ppm 이하로 규정

□ 전기침대(K 10004)

- 기기안에 전열소자가 있고, 그 위의 표면이 돌 또는 침대형태를 가진 기기로서 3시간이상 연속해서 사용할 때, 기기 표면의 온도가 37℃이하로 유지

□ 전기훈증기(K 60335-2-101)

- 매체를 훈증하기 위한 기열장치를 가지고 있는 기기로 방향제, 오일 등의 액체를 상온에서 증발(휘산)시키는 전기훈증기와 해충, 곤충을 퇴치하는 곤충살충기에 대해 규정

### 3. 의견제출

불임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, 업체 또는 단체는 제출기한 까지 의견서를 기술표준원 전기용품안전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제출기한 : 2006. 10. 02.

나.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반여부와 그 사유)

다. 의견 제출자의 인적사항(주소 및 전화번호)

라. 단체인 경우(단체명, 대표자명, 주소, 전화번호)

※ 관련 안전기준을 열람하시려면 기술표준원 전기용품안전팀으로 문의하거나 기술표준원 홈페이지의 고시·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※ 기술표준원 연락처

○ 주 소 :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

○ 전화번호 : 02-509-7242(FAX : 02-507-6657)

○ 홈페이지 : <http://www.ats.go.kr>